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자 (서명) | 번호 | 개정일자 | 개정자 (서명) |
|----|------|----------|----|------|----------|
| 1 | | | 16 | | |
| 2 | | | 17 | | |
| 3 | | | 18 | | |
| 4 | | | 19 | | |
| 5 | | | 20 | | |
| 6 | | | 21 | | |
| 7 | | | 22 | | |
| 8 | | | 23 | | |
| 9 | | | 24 | | |
| 10 | | | 25 | | |
| 11 | | | 26 | | |
| 12 | | | 27 | | |
| 13 | | | 28 | | |
| 14 | | | 29 | | |
| 15 | | | 30 | | |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교육 및 연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대학(원), 대학본부, 연구소, 부속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연구원 및 기타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사람에게 침입한 특정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
2. 감염병 (의심)환자란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 감염병 확진을 받았거나 의사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유행이란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 감염병이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방역물품이란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발열감시, 전파차단 조치, 격리 및 평상시 손씻기 실천, 학교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의미한다.

제 2 장 감염병관리위원회

제4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과대학장, 항공경영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본다.

-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
3. 방역물품 공급 및 방역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대응계획의 검토
5.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감염병 관리 조직

제10조 (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① 대학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 ② 감염병 관리 조직은 감염병 총괄관리자,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한다.
- ③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지휘를 담당하며, 학생처장으로 한다.
- ④ 발생감시팀은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 관리자, 모니터링요원, 의료지원실 직원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 ⑤ 예방관리팀은 평상시의 예방활동과 감염병 발생시의 대응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 관리자, 의료지원실 직원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
- ⑥ 학사관리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학사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교무처 수업담당, 단과대학 및 대학원 수업 담당자, 학부(과) 조교 등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교무팀장으로 한다.
- ⑦ 행정지원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며, 사무처 총무행정, 구매, 재무 담당자, 기획처 예산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 (감염병 총괄관리자)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지휘를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 ②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총장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 담당 : 사고지휘관 역할
 2.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체계의 구축
 3. 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및 관리

제12조 (발생감시팀) ① 발생감시팀장은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업무

를 총괄한다.

- ② 발생감시팀장은 대학교 전체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휘감독하며, 감염병 발생 정보를 취합하여 감염병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3조 (감염병 관리자) ① 대학 내 각 기구별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및 관리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대학본부, 연구소, 부속기관, 기숙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 기구 내 감염병 발생 감시
2. 감염병 발생 정보의 취합 및 보고
3. 구성원들에게 감염병 관련 정보의 제공
4. 예방접종 관리
5. 감염병 (의심) 환자 관리
6.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
7.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4조 (모니터링요원) ① 본 대학의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모니터링요원은 교수, 각 학과의 직원, 학생 대표, 동아리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 ③ 모니터링요원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나 교직원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해당 환자가 소속된 기구의 감염병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의료지원실) 의료지원실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1. 감염병 발생 감시
2. 학생 및 교직원용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3.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상담
4. 예방접종 실시(감염병 유행 차단 조치로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감염병 (의심) 환자 관리
6.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
7.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4장 감염병 관리 및 조치사항

제16조 (예방접종)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실시를 권고하고, 이에 대

- 한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숙사에 입소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입소 이전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안내한다.

제17조 (방역) ① 행정지원팀장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또는 유행 시 임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